

## 8. 토지수용법중 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 공고 제1998-201호 1998. 5. 20

### 주요 골자

- 가. 제철, 비료등 개별제조업종을 공익사업으로 보아 토지를 수용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함.
- 나. 공공사업의 준비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시 허가권자를 시·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조정함.
- 다.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관할로 조정함.
- 라. 토지소유자의 잔여지매수 청구시한이 한정되어 있어 피수용자의 권리구제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, 매수청구를 그 잔여지에 접속된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 청구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함.
- 마.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,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하고, 행정소송이 보상금증액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재결청을 당사자에서 제외토록 현행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개선함.
- 바.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서만 행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업무를 기업자가 국가·지자체·한국토지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직접 대집행을 하거나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의뢰하여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사업 시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개선함.
- 사.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금형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, 그에 따른 부과절차를 정함.

## 개 정 이 유

공공사업의 준비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시허가권자를 시·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조정하고,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업무를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관할을 변경하며,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기간을 단축토록 하며, 지자체에 의뢰하여야만 행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업무를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사업 시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기업자가 국가·지자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직접 행정대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